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95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김성원 · 김선교 · 고동진
김종양 · 김태호 · 김용태
박성훈 · 한기호 · 유용원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의 시책) ① 국가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공공데이터의 보호 방안
3.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학습용데이터의 보호 방안
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공공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

7.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학습용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2(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의 시책) ① 국가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u> <u>2.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공공데이터의 보호 방안</u> <u>3.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학습용데이터의 보호 방안</u> <u>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

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6. (생략) ② (생략)	한 사업자의 책무) ①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공공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u> 7. <u>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이용되는 학습용데이터의 보호 및 안전관리</u>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